제 1장 총칙

제 1조 [동아리 명칭]

1. 본 동아리의 명칭은 “흥사단아카데미(ACA)”로 한다.

제 2조 [목적]

시사토론을 통해서 발표 실력과 자신감 향샹과 팀플에 대한 도움을 준다.

제 3조 [동아리 소재]

1. 본 동아리의 소재지는 숭실대학교 내에 둔다.

제 2장 의원진 및 집행부

제 1조 [임원진의 임기]

1. 임원진은 회장, 부회장을 정의한다.
2. 임원진의 임기는 반 년으로 한다.

제 2조 [임원진 선출 방식]

1. 임원진의 선출은 총회에서 동아리 내 투표로 다수결로 선출된다

제 3조 [임원진]

1. 회장은 동아리 내 대부분 업무를 수행한다.
2. 부회장은 정기행사 기획 수행과 회장의 업무를 보조한다.

제 4조 [집행부]

1. 집행부는 임원진과 집행부원으로 구성되며, 집행부원은 임원진이 선임한다.
2. 집행부는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진다.
   1. 동아리 부원의 제명에 대한 회의를 건의할 수 있는 권리
   2. 행사기획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3. 집행부의 의결은 집행부 회의를 통해 진행한다.

제 5조 [집행부 회의]

* 1. 집행부 회의는 집행부와 월 1회 진행한다.
  2. 집행부 회의는 반드시 문서로 기록해야 한다.

제 3장 회원

제 1조 [회원 자격 및 의무]

회원 자격 : 본교학생 해당년 6학번 이하 가능.

의무 : 가입 후 다음 정기모집에 필참.

제 2조 [회원의 가입]

1. 입회원서 작성과 더불어 회비 납부.
2. 임원진 또는 집행부와 면담.

제 3조 [회원의 탈퇴]

1. 탈퇴를 희망하는 회원은 집행부에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탈퇴가 성립된다.

제 4조 [회원의 제명]

1. '문제가 되는 동아리원'에 대하여 이루어진다.
   1. '문제가 되는 동아리원'이라 함은 동아리 내에서 직/간접적인 피해, 물의, 혼란을 일으킨 자를 칭한다.
2. 대상자에 대하여 임원 자체 소집, 집행부의 발의 혹은 동아리원 내 다수의 발의를 우선으로 한다.
   1. 다수라 함은 동아리 1학기 회원명부 상 1/3에 달하는 인원이다.
3. 대상자를 제외한 동아리원의 1차 회의로 결정한다.
   1. 투표를 통해 과반수 이상이 제명에 찬성할 시의 '제명자'로 분류한다.
4. 제명자는 최후의 변론 3분의 시간을 준다.
5. 대상자를 제외한 동아리원의 2차 회의로 최종 결정한다.
   1. 2차 회의는 사안의 중요성 및 대상자의 행위 및 대처에 따라 생략 가능하다.
6. 제명자는 임원이 결정하는 기간 내 동아리 내 개인물품을 정리한다.
   1. 기간은 2주를 넘지 아니한다.
   2. 미정리 시 동아리 내 자체 처리 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7. '비제명자'는 피해 및 물의에 대하여 임원이 결정하는 기간 내 사과문을 게시한다.
   1. 기간은 2주를 넘지 아니한다.
   2. 미게시 시 일어나는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제 4장 회의

제 1조 [정기 모임]

한달에 1회 시사토론 모임을 가진다.

제 2조 [총회]

집행부가 안건을 제시할 시 총회를 개시한다.

제 5장 재정

제 1조 [수입]

1. 동아리의 수입은 회비로 정하며, 이는 본 동아리의 활동비로 사용된다.

제 2조 [회비]

1. 본 동아리의 모든 회원은 임원진이 지정하는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2. 동아리 전체 활동 진행에 어려움이 클 시에 회비 납부에 대하여 논의 가능하다.
   1. 국가적 재난 상황 등 특수한 환경적 요인
3. 일반 탈퇴 및 제명 시 회비 반환 불가.
4. 특수한 상황 시에는 반환.
   1. 이하 내용에 대해서만 반환 가능하다.
   2. 중도 휴학, 퇴학, 자퇴
5. 회비 반환 금액은 해당 등록학기 납부한 금액의 50%에 달하는 금액만 반환한다..
   1. 학기 구분은 3월~8월, 9월~다음 해 2월
   2. 각 학기 구분 중 마지막 달에는 반환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 3조 [결산보고]

1. 학기 마지막 정기모임때 당 학기의 결산보고를 해야 한다.

제 6장 동아리 등록

제 1조 [등록]

1. 동아리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숭실대학교 학칙 및 동아리연합회 회칙에 따른다.

제 7장 부칙

제 1조 [회칙 발효]

1. 각 개정안의 개정 회칙은 다음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초판 [2020.02.25]

제 2조 [회칙 개정]

1. 본 동아리의 회칙 개정은 총회에서 회원의 투표에 의해 개정될 수 있으며 출석 인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이어야 한다.